



제433회국회(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만 3세 미만의 장애영아에 대한 학급 설치 기준
마련〉

■ 정을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6869호)

2026. 4.

교 육 위 원 회

전문위원 윤 상 열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만 3세 미만의 장애영아에 대한 학급 설치 기준 마련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정을호의원 등 12인

2. 발 의 일 : 2026. 2. 13.

3. 회 부 일 : 2026. 2. 1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하여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를 고려한 적절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특수학교 학급과 일반학교 특수학급의 설치 기준을 학교급별로 달리 규정하고 있음.

이와 같은 학급 설치 기준에는 장애영아를 위한 학급의 설치 기준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유치원 과정의 기준을 적용하여 장애영아 4명을 기준으로 1학급을 설치하고 있는 실정임.

그러나, 만 3세 미만의 영아기는 보다 세심한 보살핌을 필요로 하는 발달단계로, 장애영아를 위한 학급은 유치원 과정의 학급 설치 기준보다 하향하여 설치할 필요가 있다는 현장의 의견이 제기되는 상황임.

이에 만 3세 미만의 장애영아를 교육하는 학급에 대해서는 학급 설치 기준을 유치원 과정보다 하향하여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애영아의 교육권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1항제1호 후단 신설).

Ⅲ. 검토의견

1. 만 3세 미만의 장애영아에 대한 학급 설치 기준 마련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특수학교의 유치원 과정에 배치된 만 3세 미만의 장애영아에 대한 학급 설치 기준을 별도로 마련하여 장애영아가 1인 이상 2인 이하인 경우 1학급을 설치하고, 2인을 초과하는 경우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개 정 안
제27조(특수학교의 학급 및 각급 학교의 특수학급 설치 기준) ① 특수학교와 각급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학급 및 특수학급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유치원 과정의 경우 : 특수교육대상자가 1인 이상 4인 이하인 경우 1학급을 설치하고, 4인을 초과하는 경우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한다. <단서 신설>	제27조(특수학교의 학급 및 각급 학교의 특수학급 설치 기준) ① ----- ----- ----- -----. 1. ----- ----- ----- ----- ----- <u>. 다만, 만 3세 미만의 장애영아가 배치된 학급의 경우에는 장애영아</u>

	<u>가 1인 이상 2인 이하인 경우 1학급을 설치하고, 2인을 초과하는 경우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한다.</u>
2. 3. (생략)	2. 3. (현행과 같음)
② 3. (생략)	② 3. (현행과 같음)

나. 검토의견

- ☐ 현재 만 3세 미만의 장애영아의 보호자는 조기교육이 필요한 경우 교육장에게 교육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교육장은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진단·평가결과를 기초로 만 3세 미만의 장애영아를 특수학교의 유치원과 정, 영아학급 또는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배치하거나 순회교육을 제공하고 있음¹⁾.
- ☐ 2025년 4월 기준 특수학교에서는 장애영아를 위한 학급이 37개 설치되었고, 장애영아 수는 9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²⁾.

☐ 개정안은 특수학교의 유치원 과정에 있는 만 3세 미만의 장애영아를

- 1)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8조(장애영아의 교육지원) ① 만 3세 미만의 장애영아의 보호자는 조기교육이 필요한 경우 교육장에게 교육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교육장은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진단·평가결과를 기초로 만 3세 미만의 장애영아를 특수학교의 유치원과정, 영아학급 또는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배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배치된 장애영아가 의료기관, 복지시설 또는 가정 등에 있을 경우에는 특수교육교원 및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담당 인력 등으로 하여금 순회교육을 제공하도록 할 수 있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영아를 위한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설비를 정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장애영아의 교육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 2025년 4월 기준 특수학교 37학급, 특수교육지원센터 69학급, 총 106학급의 장애영아 학급이 설치되었고, 특수학교에서 무상교육 지원을 받는 장애영아 수는 92명,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지원을 받는 장애영아 수는 268명으로 총 360명의 장애영아가 무상교육 지원을 받고 있으며, 연령별 현황은 1세 미만 23명, 1세 132명, 2세 205명으로 총 360명임(2025년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교육부, 2025.8, p45).

위하여 별도의 특수학급 설치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현재 유치원 과정의 경우 1인 이상 4인 이하인 경우 1개 학급을 설치하고, 4인을 초과하는 경우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하도록 하는 것과 달리, 개정안은 1인 이상 2인 이하인 경우 1개 학급을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제안이유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만 3세 미만의 영아기는 보다 세심한 보살핌을 필요로 하는 발달단계로, 장애영아를 위한 학급은 유치원 과정³⁾의 학급 설치 기준보다 하향하여 설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장애영아의 교육 여건을 보다 개선하고 지원을 강화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함.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상 특수학교 학급 설치 기준〕

구 분		설치 학급 수
유치원 과정		1개 - 특수교육대상자가 1인 이상 4인 이하인 경우 2개 이상 - 4인 을 초과하는 경우
	만 3세 미만	1개 - 특수교육대상자가 1인 이상 2인 이하인 경우 2개 이상 - 2인 을 초과하는 경우

□ 교육부는 보다 세심한 보살핌을 필요로 하는 3세 미만의 장애영아의 발달적 특성을 고려할 때, 학급의 설치 기준을 유치원 과정의 학급 기

3) 일반적으로 유치원 과정의 경우 유아(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전까지의 어린이)의 교육을 위하여 운영되는 것으로 보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2. “각급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유아교육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아”란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전까지의 어린이를 말한다.
2. “유치원”이란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

준보다 하향하여 규정함으로써 장애영아의 교육권을 강화하고자 하는
개정안은 타당하다는 의견임.

[개정안에 대한 관련 기관 의견]

<시·도교육청>

(대구, 광주, 경기 - 신중검토)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특수교육교원 배치 기준과 연계하여 검토가 필요하며, 영아기의 특성에 따라 영아학급의 급당 장애영아 수가 유동적이고, 특수학교 시설 여건 및 공간 확보, 특수교육 담당교사 정원 확보 등 현장의 상황과 장애영아의 순회교육 병행 등을 고려할 때 장애영아를 담당하는 학급에 대한 기준을 하향 조정하는 것은 신중 검토 필요

(전북 등 - 수용) 영아기의 발달 특성에 따른 조기개입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장애영아를 담당하는 학급의 설치기준 하향 조정은 매우 타당한 내용이라 판단됨

문 의 처

02)6788-5186